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의 실제와 성격

이 승 윤*

-
1. 머리말
 2. 사형 집행의 법률적 근거
 3.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의 설치와 운영
 4. 사형 집행 추이
 5. 정치·사상범 비율 검토
 6. 맺음말
-

1. 머리말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불가역성을 지닌 궁극의 형벌이다. 사형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비롯되는데, 보복주의적 입장에서 시행되거나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학예연구사

일제강점기에도 사형은 집행되었다. 허위, 이강년, 이재명, 강우규 등의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사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일제강점기 사형은 그 주체가 일본이었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 합의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일제는 1909년 이후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독립운동 탄압에 활용했다. 특히 보안법, 치안유지법 등 여러 특별법을 만들어 정치범을 양산했으며, 사형은 이러한 정치범을 처단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가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의 사법과 행형을 장악한 것은 ‘위험한 인물’을 식민지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고,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심어주어 안정적 식민통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¹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사회적 연구가 분주히 전개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제강점기 사형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연구자는 이덕인이다. 그는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형제도의 제도적 변화와 일제강점기 사형 집행 통계 분석을 통해 사형이 공포 본위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설명했다.² 이어 전병무는 사형 집행 과정과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집행인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 통제 수단으로 사형이 활용된 실태를 소개했다.³

1 일제강점기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사형은 형벌의 한 종류로 종종 다루어졌으나, 사형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종민, 「식민지시기 형사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55, 1999; 水野直樹, 이영록 역,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체제의 식민지적 성격」, 『법사학연구』 26, 2002; 김항기, 「일제강점 초기(1910~1915) 총독부 재판소의 의병 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2020.

2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형사정책』 25-2, 2013.

3 전병무,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사형 통계 자료와 사형 집행을 중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형의 경향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사형수 인원이 많다 보니 사형수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나 정치적 성격의 규명에는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사형의 역사적·정치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시선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 시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제는 이미 1908년 무렵부터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으며, 사형의 판결과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시기를 1908년부터 1945년까지로 정하고, 대상은 서대문형무소⁴로 한정하여 사형 집행의 실체와 집행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서대문형무소는 대표적인 식민지 감옥으로, 1908년 경성감옥으로 개소하였다. 일제가 만든 최초의 근대감옥이면서 개소 당시부터 내부에 사형장을 설치해 사형 집행을 했던 장소이다. 서대문형무소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던 바,⁵ 일제강점기 당시 건립한 사형장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은 일제의 민족 탄압을 대표하는 장소인 동시에 ‘죽음을 불사한’ 독립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다.

사형은 ‘사상법’에 대한 감시와 처벌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사형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⁶ 사형 집

심으로, 『역사연구』 40, 2021.

4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경성감옥,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서대문형무소’로 통칭하되 자료 인용 등의 필요에 따라 ‘경성감옥’, ‘서대문감옥’의 명칭도 함께 사용할 것이다.

5 양성숙, 「일제하 서대문형무소 연구-의병투쟁과 105인 사건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6 선행연구에서 형무소별 집행인원을 간단히 제시하였지만,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행 대상을 세밀히 분석하여 일제가 사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형 집행 기사가 게재된 대한제국 『관보』와 『조선총독부 관보』를 주로 활용하였다. 초기 사형장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사형 집행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사형과 관련된 법령과 집행 과정을 검토하고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집행된 실제 사형 집행의 수적 추이, 나아가 주요 인물과 관련 사건을 살펴보고 그 안의 정치범·사상범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사형 집행의 법률적 근거

사형은 법률에 근거해 판단하고 집행하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사법적 행위이다. 일제는 1909년 7월 己酉覺書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사무의 처리권을 ‘위탁’받으면서 사형을 포함한 일체의 사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06년 말에서 1907년 초까지 법부와 전국 주요 재판소에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여 재판사무를 보조하게 하고,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통해 사법 사무와 일반 행정사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07년 12월 ‘재판소구성법’ 제정에 따라 1908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재판소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제는 한국의 재판기관을 주도하기 시작했다.⁷ 감

내용이 소략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 7 1908년 8월부터 1910년까지의 관감사 임명 상황을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은 판사가 1:2, 검사가 1:3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

옥사무도 1907년 12월 13일 제정한 ‘감옥관제’에 따라 內部에서 法部로 이관하여 일본인 관리가 주도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사법사무의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추진되어 왔다. 일본이 지적한 한국 사법제도의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사법사무가 일반 행정사무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부패 문란, 법률적 소양 즉 전문성 부족, 지방관이 가렴주구와 잔학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하루도 안정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일제가 지적하는 문제 중에는 사형 집행에 대한 것도 있었다.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하는 점이나 집행 후 시신을 방치하는 문제 등을 들어 비난했다.

조선 말기에 ‘사형 죄 관련 사건이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마름대로 죽이는 일이 잦고 사후에 보고하는 문제가 있다.’ 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⁸ 이에 따라 1895년 4월 ‘형률명례’ 제정 및 동년 6월 개정에 따라 사형제도를 개선하였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법부에서 상주하여 국왕의 재가를 거친 후 처형하도록 했으며,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교수형으로 사형 방식을 단일화하였다.⁹

그러나 사형 집행상 문제는 그 이후에도 종종 제기되었다. 1906년 통감부는 법부에 사형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고, 법부는 사형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행하는 문제와 집행 후 시신을 옥외에 방치하거나 드러내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것은 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미비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검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회답했다.¹⁰ 1907년 5월 법부에서는 경기지역 재판소와 지방 각 재판소에 사형 집행은 반드시 감옥

제도사』, 푸른역사, 2014, 444쪽).

8 도면회, 앞의 책, 2014, 164~165쪽.

9 도면회, 앞의 책, 2014, 237쪽. 단 죄인이 도주하거나 외부로부터 파옥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10 『황성신문』 1906년 8월 5일, “改善執刑”

내에서만 해야 한다고 통첩했다. 만약 부득이하게 감옥 안에서 집행하지 못할 경우 통행이 많은 대로변이나 인가 근처에서 시행하지 말 것이며, 후미지고 한적한(僻閑) 장소를 골라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¹¹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1906년부터 지속적인 변화와 정례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 1907년 12월 13일 감옥관제를 공포하고 1908년 7월 16일 감옥사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일제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형은 ‘교수형’으로, ‘감옥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사법권 ‘이양’은 ‘치안 유지와 생명·재산의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한 일이지만, 일제는 당시 병합에 반대하는 세력 즉 독립운동 세력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 합법적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 감옥을 만들어 항일세력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극단적으로는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항일인사는 일제가 주도하는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고 일제가 관리하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또 일부는 사형 집행의 대상자가 되었다.

사형은 특히 사법 운영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강년, 이인영, 허위, 이은찬 등 많은 의병들이 일제가 주도하는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1945년 광복 직전까지 집행되었고, 그 안에는 적지 않은 수의 독립운동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는 사형 판결에서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했다. 사형에 관한 법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감옥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¹²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2일, “執行擇地”

먼저 형법(법률 제45호, 1911년)에서는 사형의 집행장소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죄목이 명시되어 있다. ‘제11조 사형은 감옥 내에서 교수로서 이를 집행하며,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는 그 집행에 이를 때까지 감옥에 구치한다.’고 하여 사형의 집행장소를 감옥으로 한정했다. 제73조부터는 여러 죄목을 명시했는데, 그 중 사형이 가능한 죄목은 황실에 대한 죄,¹³ 내란에 관한 죄,¹⁴ 外患에 관한 죄,¹⁵ 溢水 및 水利에 관한 죄,¹⁶ 왕래를 방해하는 죄,¹⁷ 음료수에 관한 죄,¹⁸ 살인죄,¹⁹ 절도 및

12 조선총독부는 1912년 4월 1일 제령 제11호로 「조선형사령」을 공포하며 일본의 형법·형법시행법·형사소송법 등 12개 법률을 의용할 것을 규정했다.

13 제73조.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 또는 가하고자 한 자는 사형에 처함.

제75조. 황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위해를 가하고자 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함.

14 제77조 1항.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15 제81조. 외국과 비밀히 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쟁의 단서를 열게 하거나 또는 적국과 더불어 제국에 抗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제82조. 요새·진영·함선 기타 군용에 이바지하는 장소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교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제83조. 적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요새·진영·함선·병기·탄약·기차·전차·철도·전선 기타 군용에 제공하는 장소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혹은 사용을 불가능케 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제85조.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며 또는 적국의 간첩을 幫助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역시 그러함.

16 제119조. 물이 넘치게 하여 現에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고 또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기차, 전차 혹은 鑛坑을 침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17 제126조. 사람이 있는 기차 또는 전차를 전복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사람이 있는 함선을 전복 또는 파괴한 자도 역시 같음. 전 2항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강도죄²⁰이다. 다양한 죄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적 범죄·황실에 대한 죄·내란에 관한 죄·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면 모두 결과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형 판결을 내렸다.

특별법²¹에도 사형을 처벌규정으로 정한 법령이 있다. 「폭발물취체벌칙」과 「치안유지법」이 그것이다. 「폭발물취체벌칙」 제1조에는 “치안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람의 신체·재산을 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한 자와 그것을 사용하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²² 1919년 남대문역 앞에서 사이토[齋藤實] 총독을 향해 투탄의거를 행했다가 1920년 사형에 처해진 강우규, 1922년 함경북도 신건원주재소를 습격했다가 사형에 처해진 金學燮·文昌學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단 강우규는 살인죄, 김학섭·문창학은 강도살인죄가 함께 적용되었다.

-
- 18 제146조. 수도를 통해 공중에 공급하는 음료의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혼입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이로 인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19 제199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제20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20 제240조. 강도가 사람을 다치게 한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죽음에 이른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제241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이로 인하여 부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 21 일제는 수형자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형법을 제외한 모든 법령, 규칙, 취체령 위반자는 특별법범으로 분류된다. 보안법, 산림령, 출판법, 총포화약취체령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2 「폭발물취체벌칙」은 1884년 일본에서 처음 제정되었다가, 1908년, 1918년에 개정되었다. 본문에 명시한 조문은 1918년 개정된 내용이며, 그 이전까지는 제1조의 처벌은 ‘사형’으로 단일하였다(조선총독부 편, 『朝鮮法令輯覽』下, 1940, 334쪽).

「치안유지법」은 1925년 처음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1928년에 개정하였는데, 최고형의 범주를 사형으로 변경하였고, 적용대상은 결사를 지원하거나 결사의 조직을 준비한 자까지 확대하였다.²³ 「치안유지법」의 개정으로 ‘살인’과 무관하게 대상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형 집행의 절차는 형사소송법과 감옥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집행은 사법대신의 명령에 의하며(제538조), 명령 후 5일 이내에(제539조), 검사 및 재판소 서기가 입회한 상태에서(제541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검사 또는 감옥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형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제541조). 사형장에 입회한 재판소 서기는 집행시말서를 작성하고 검사 및 감옥의 장이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해야 했다(제542조).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때는 사법대신의 명령에 의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었다(제543조). 감옥법에서는 사형 장소 및 사형 일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감옥 내에서 집행하며, 대제축일·1월 1일과 2일·12월 31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였다(제71조). 또한 교수형을 집행한 후 시신을 검사하고 5분이 경과한 후에 교수줄을 풀도록 했다(제72조). 이하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는 시신의 인도·가매장 및 합장, 유골 교부 등 사후 처리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일제강점기 사형 집행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거해 판결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형 판결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²⁴ 일본은 법 적용에서 한

23 『조선총독부관보』 제454호(1928년 7월 4일), 칙령 제129호.

국의 특수 상황을 강조했다.²⁵

일제는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일본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대전』의 일부 조항을 1917년까지 존속시켰다.²⁶ 「치안유지법」 적용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반면,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하였다.²⁷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사형자 중에는 많은 독립운동가가 포함되어 있다.

사형수 중 독립운동가의 비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사형은 늘 언론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신문에는 주요 인사의 사형 언도, 판결, 집행 및 후일담 등을 기사화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반일적 인물들의 사형이 ‘민족을 위한 희생’으로 간주되거나 영웅시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에 1920년 10월 28일 옥중 사망자의 분묘 조성과 추모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선총독부령 「刑死者의 墳墓 祭祀 肖像 등의 取扱에 관한 건」²⁸을 공포했다.²⁹ 해당 부령에 따르면 옥중 사망한 자나 사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분묘를 만들 때는 위치와 구조 등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통제했다. 형사자의 사진, 초상, 필적류를 공공연히 진열하거

24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인구수 대비 사형 집행 건수를 비교해도 한국이 2~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인다(전병무, 앞의 논문, 2021, 170~171쪽).

25 일본에서의 처벌체계는 재산형 부과를 중심으로 실제 처벌을 유보하는 국가적 관용주의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자유형을 중요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중형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 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38쪽).

26 『조선총독부관보』 제1603호(1917년 12월 8일).

27 水野直樹, 이영록 역, 앞의 논문, 2002, 69~72쪽.

28 이하 ‘형사자 취급에 관한 건’이라 약칭한다.

29 『조선총독부관보』 제2465호, 1920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령 제160호.

나 공포하여 형사자를 칭찬하고 드높이는 행위도 금지하였다. 형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를 하거나 그 형상 또는 기념비를 건설하는 일도 금지하였다. 총독부가 이러한 법령을 발표한 것은 당시 3·1운동의 영향으로 여러 방면에서 항일운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식민당국을 향한 폭력적 공격과 투탄의거 즉 의열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는 부령의 전문을 소개하며 이 부령이 발포된 것은 ‘어떠한 중대범인의 사형 집행에 관하여 형의 집행상 필요가 절박하였기에 갑작스럽게’ 제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⁰ 기사에서 언급한 ‘중대범인’이란 강우규를 말한다.³¹ 강우규의 의거는 신임총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나 비록 의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식민당국과 전 세계에 한국인의 확고한 독립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그리하여 그의 재판 진행과정은 세세히 보도되었고, 그가 법정에서 보여준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구치감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 등 모든 것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다.³² 당시 강우규의 사형을 두고 세간에 항설이 많았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³³ 총독부의 입장에

30 『매일신보』 1920년 11월 5일, “사형자의 분묘와 제사 급 초상 취체에 관한 신 부령 공포”

31 『개벽』 7호 1921년 1월 1일, “경신년의 거둬(하)”

32 『매일신보』 1920년 6월 15일, “강우규 사형 집행은 언제 될런지 아직 모른다. 종작없는 세간의 낭설들, 서대문감옥 三井 典獄 談”

33 이와 관련한 기사 중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줄연히 사형 집행을 할 터이지만 뜻밖에 폭풍우가 있어서 경성지방은 암흑 세계가 되어 드디어 그 때 홍수를 보게 된 고로 당국은 이를 염려하여 마침내 집행을 연기하고 겨울을 기다려서 집행하더니 최근 기후가 험악해짐은 필경 하늘이 그 거룩한 사람을 애석하시는 바이다. 그런 즉 어느 때 일대 사건이 돌발할는지 모를 일이라고 떠든다고”(『매일신보』 1920년 12월 12일, “함흥에 기괴한 풍설—강우규 사형 집행에 대하여 함흥서는 별벌의 풍설”).

서는 이러한 반응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사형을 확정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사형 집행을 미루고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³⁴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가의 사형이 반일감정의 결집 혹은 또 다른 의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자 취급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고 그 이후 강우규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명령하였다.³⁵ 해당 법령의 적용 사례는 의열단의 일원으로 밀양경찰서 투탄의거를 실행한 **崔敬鶴(崔壽鳳)**³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1년 5월 23일 사형이 확정되고 동년 7월 8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밀양청년회에서 그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자 조위금을 모집하였고, 몇 사람이 대구감옥으로 가서 시신을 인수해왔다. 이들은 밀양역에 일경의 경계가 엄중할 것을 예상하여 청도역에서 내려 밀양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밀양경찰서에서는 읍내에서 정거장까지 길 좌우에 엄중 경계하며 한 사람도 마중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 이튿날에는 조위금 모집자 및 참여자 백여 명을 호출하여 조사하고 그 중 모집자 10여 명을 ‘범죄인 사체 취체 규칙 위반’으로 검거하였다.³⁷

이처럼 사형 집행 뿐 아니라 집행 후 시신의 인수·이동·장례까지 철저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통제된 것은 일제의 사형이 가지는 정치적 중

34 일반적인 경우 형이 확정된 후 2~3개월 내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35 「형사자 취급에 관한 건」은 1920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발포되어 즉시 시행되었고, 강우규의 사형일은 동년 11월 29일이다.

36 **崔敬鶴(本명 崔壽鳳, 1894.3.3.~1921.7.8.)** 경남 밀양 출신. 사립동화학교, 동래 명정학교,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 의열단 高仁德에게 폭약과 제조기를 전달받아 폭탄 2개를 만들었고, 1920년 12월 27일 이를 밀양경찰서에 던졌다.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4월 16일 사형을 언도받고, 동년 7월 8일 대구감옥에서 순국하였다.

37 『매일신보』 1921년 7월 21일, “경계 엄중리에 사형 집행된 최경학 시체 출발” 기사에는 ‘범죄인사체취체규칙’ 위반이라 표시했는데, 이는 「刑死者의 墳墓 祭祀 肖像」 등의 取扱에 관한 건을 말한다.

요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일제는 식민통치에 위협이 되는 항일세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사형을 활용했으며, 사형제도를 통해 형식상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에 노력했다.³⁸ 나아가 독립운동가의 사형집행이 또 다른 반일정서를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된 것이다.

3.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의 설치와 운영

일제강점기 사형 집행은 「감옥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다.³⁹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는 구치감에 구금되며, 사형 집행은 감옥 내의 형장에서 집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감옥에 사형장이 설치된 것은 아니었고, 控訴院⁴⁰ 관할 감옥에만 설치되었다. 당시 공소원은 경성·대구·평양 3곳이 있었다. 따라서 사형장이 설치된 감옥은 경성공소원 관할 경성감옥, 평양공소원 관할 평양감옥, 대구공소원 관할 대구감옥 3곳이었다. 이 3곳을 제외한 다른 감옥이나 장소에서의 사형 집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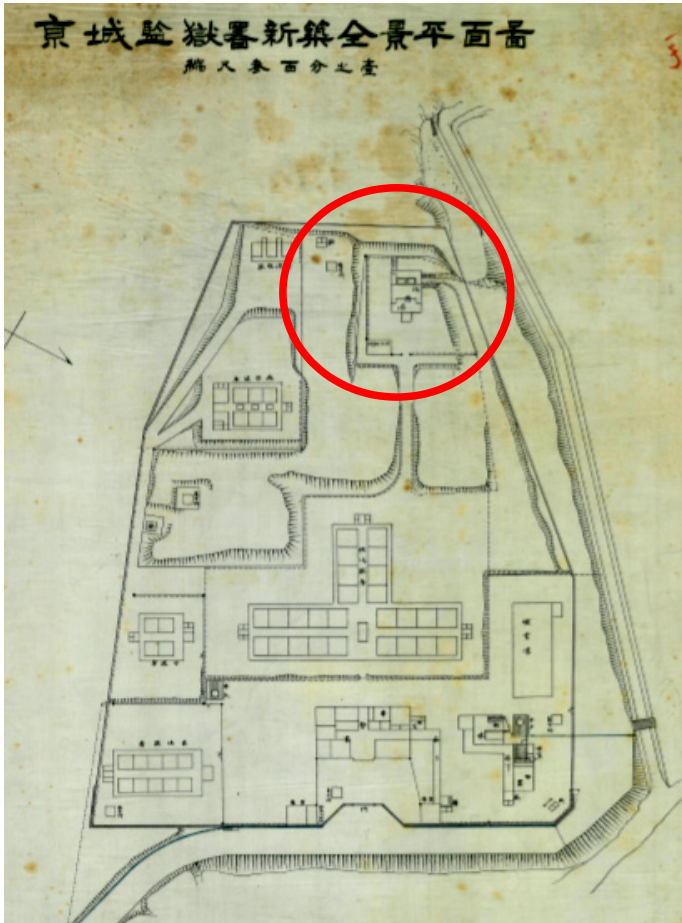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경성감옥은 경성공소원의 관할 하에 사형이 집행된 장소였다. 경성공소원은 경성지방법원, 공주지방법원, 함흥지방법원 및 경기·충청·강원·함경도 일대에 소재한 지방법원지청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이었다.⁴¹ 그러므로 경성공소원의 관할 구역인 서울·경기·충청·

38 김항기,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61, 2018, 11쪽 ; 김항기, 앞의 논문, 2020, 45쪽.

39 「감옥법」(법률 제28호, 1908년 3월).

40 공소원은 1907년 12월 23일 발표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신설된 2심 재판소이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 행정 사무가 일본 정부로 위탁된 이후 통감부는 동년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해 이를 복심법원으로 바꾸었다.

강원·함경도 일대 지방법원과 지청에서 심리한 재판의 결과로 사형이 언도된 경우에는 경성감옥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림 1〉 경성감옥서 신축 전경 평면도

41 『조선총독부관보』 제248호(1913년 5월 30일), “관통첩 제170호 감옥 수용 구분 변경에 관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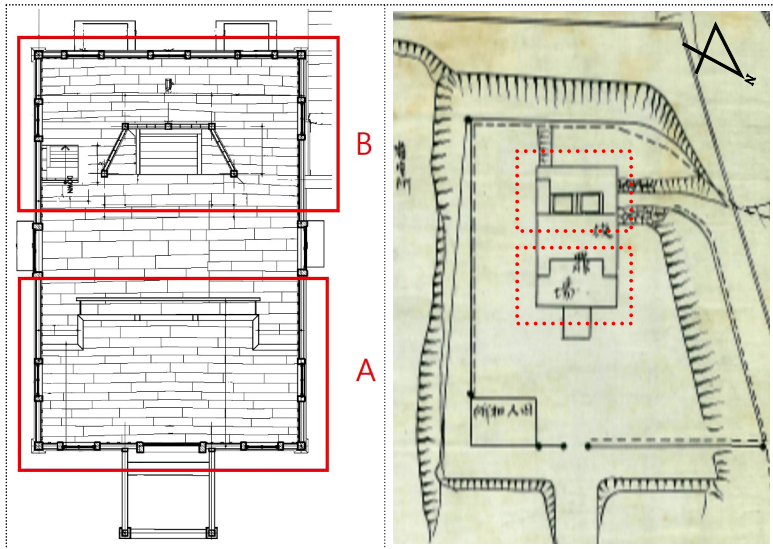
경성감옥이 처음 설치된 1908년부터 감옥 안에 사형장이 배치되었다. 사형 집행의 원칙은 ‘감옥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장은 감옥 내에서도 가장 깊은 안쪽에 배치되었다. 현재까지도 서대문형무소 안에 사형장이 남아있지만, 처음 경성감옥으로 개소될 당시의 사형장은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기록원 소장 ‘경성감옥서 신축전경 평면도’가 유일하다(〈그림 1〉, ○표시가 사형장). 이 도면을 통해 설립 초기 경성감옥의 사형장에 대해 기능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형장은 감옥의 가장 안쪽에 자리한다. 방위상 감옥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다. 감옥 전체를 둘러싼 외벽 외에 사형장을 두르고 있는 판벽이 별도로 있다. 주변 대지와 다소간의 단차가 있어 여타 시설과는 분리하였다는 느낌이 강하다. 입구는 獄舍 방향으로 한 개, 사형장 건물에서 직접 외부로 연결되는 북쪽에 한 개 있다. 동쪽으로 난 입구는 형 집행을 하는 형무소 직원들이 드나들 때 이용하며, 사형수가 형장에 들어갈 때도 사용한다. 반면 북쪽으로 난 출구는 감옥 건물과 직접 맞닿으며 곧바로 감옥 담장 밖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다. 사형 집행이 끝난 후 시신을 옮기는 문 즉, 屍軀門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쪽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에 ‘囚人拘所’가 위치해 있는데, 형 집행 전에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입구 정면에 보다 큰 건물에는 ‘絞罪場’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곳이 사형이 집행된 건물이다. 건물 내부 모습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모습과 거의 같다(〈그림 2〉).

도면상에 표시된 것은 건물 1층이며, 이곳은 사형 집행관이 배석하는 자리(A)와 교수대가 위치한 자리(B)로 구분된다. A구역에는 보통 법원에서 형 집행을 위해 출장한 검사와 전옥, 기타 참관인들의 배석을 위해 책상·의자가 배치된다. B구역에는 한가운데 교수대가 위치하고

그 좌측으로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사형수가 완전히 절명하였는지 확인하고 후처리를 위해 시신수습실로 내려가는 통로이다. 도면 상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교수대 아래에는 시신 수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 2m 내외의 깊이로 굴착하고 해당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성한 것이다. 사형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5분이 지나면, 간수는 교수줄을 풀고 시신을 내려 북쪽 문을 통해 시신을 사형장 밖으로 이동시킨다.⁴²



〈그림 2〉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현존 건물(좌)과 경성감옥 사형장(우) 구조 비교

이상과 같이 1908년에 건축된 사형장과 현존하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은 그 구조에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비교가 되는 것은 사형대의

42 「감옥법」 72조.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교수형을 집행한 후 死相을 검사하고 5분이 경과한 후에 교수줄을 풀 수 있다.

숫자이다. 최초로 만든 사형장에는 교수대가 2개 설치되어 있었다. 교수대가 2개 설치된 이유에 대해 1920년대 초반 서대문형무소 典獄⁴³을 지낸 土居寬申은 ‘남편을 살해한 간음남과 간음녀를 양쪽으로 목매달아 함께 저승으로 가는 모양’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⁴⁴ 그러나 실상은 사형 집행이 많았던 감옥 설치 초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번에 두 명씩 집행하기 위한 장치였다.⁴⁵ 서대문형무소에서 많게는 하루 10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수감자가 증가하면서 감옥은 증축·확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사형장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사형장을 이전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21년 전후로 추정된다. 1915년 증축 계획에 따라 1919년까지 기존 감옥 남쪽에 3개 옥사, 중앙사 1개 건물을 먼저 설치하였고, 1922~1923년 동안 기존 옥사를 살짝 비껴난 위치에 3개의 옥사를 추가 설치했다.⁴⁶ 1922년 옥사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추진한 것이 사형장의 이전이었다. 1921년 1월 전옥으로 부임한 土居寬申이 부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의 회고에 모든 건축 사업 이전에 ‘중앙부에 위치한 사형장을 제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⁴⁷ 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1922년 본격적인 옥사 신축 이전에 사형장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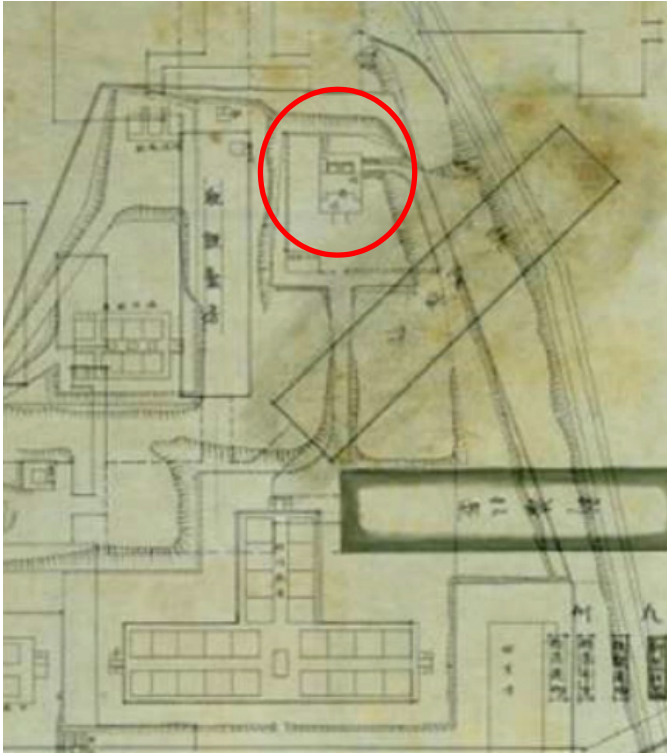
43 감옥 사무 일체를 총 관장하는 직 또는 그 사람으로, 일본 구 감옥제도에서 감옥의 틀을 일컫는다. 형무소장. 현재의 교도소장.

44 서운재 역, 『일제강점기 조선 행형의 이야기』, 북트리, 2020, 14쪽.

45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실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간통 관련 죄명은 많지 않다. 특히 감옥이 처음 설립된 1908~1910년 사형 집행 명단 중 ‘姦通’ 혹은 ‘謀殺本夫’, ‘因姦殺死本夫’의 죄명이 확인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1일에 2명 이상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같은 기간 동안 19회에 달한다.

46 박경목, 앞의 책, 2019, 48~54쪽.

47 서운재 역, 앞의 책, 2020, 14쪽.



〈그림 3〉 도면 비교를 통한 사형장 위치 확인

그렇다면 처음 설치한 사형장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1908년 전경 평면도와 1923년 작성된 배치도의 비교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⁴⁸ 당시 사형장에 있었던 자리는 현 10옥사와 11옥사 사이의 위치였다. 현재 이곳에는 작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형장 설치 당시 시신수습실을 만들기 위해 파놓은 지하공간을 그대로 연못으로 활용한

48 사형장 위치 확인을 위해 두 개의 도면을 겹쳐 비교했는데, 이를 위해 이용한 도면은 「경성감옥신축전경평면도」(1908)와 「서대문감옥 배치도」(1923)이다.

것으로 추정된다. 새롭게 설치한 사형장은 감옥 남서쪽에 지었으며, 기존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형대를 1개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22년 전후 설치한 두 번째 사형장은 이후 1987년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형태를 보전하고 있다.

이상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형을 집행하는 공간은 폐쇄적인 감옥 안에서도 가장 내밀한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신속·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사형 집행 추이

실제로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을까. 사형 집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신문, 판결문, 통계연보, 관보 등이다. 신문은 해당 인물의 사회적 인지도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재판과정과 사형 집행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개인이나 사건 단위로 보도되어 있어 총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 역시 종합적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판결 이후 은사·감형·옥사 등 기타 요인으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한계가 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사법과 관련한 여러 수치 정보를 담고 있어서 활용할만하다. 통계연보 ‘감옥’ 과목에서 1911년부터 ‘형사피고인의 출입’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사형 집행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다.⁴⁹ 이 자료 통계에 의하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서대문·평양·대구의 감옥에서 사형된 인원은 954명이다. 다만 여기에

49 『총독부통계연보』 1911~1943년의 자료(「형사피고인의 출입」)에 명시된 사형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단위 명).

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인원이 누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일제가 사법권을 장악한 1908~1910년까지의 사형 집행 인원도 알 수 없다.

사형 집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관보』⁵⁰이다. 1908년 7월 16일 새로운 감옥관제에 따라 감옥사무가 개시되었다.⁵¹ 이 무렵 일제는 관보를 통해 사형 집행 사실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1908년 7월 25일 관보를 통해 첫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졌고,⁵² 이후 사형이 집행 될 때마다 관보에 그 사실을 고시했다. 가장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45년 6월 26일이니,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 식민통치를 한 전 시기의 사형 집행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⁵³ 게재내용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이름과 죄명, 주소와 재판소, 판결일 및 집행일 등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1909년 2월 말 부터는 집행감옥의 명칭을 표시하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연도	인원수
1911	94	1921	45	1931	13	1941	—
1912	73	1922	39	1932	18	1942	—
1913	54	1923	27	1933	22	1943	—
1914	54	1924	11	1934	16	1944	—
1915	49	1925	18	1935	14	1945	—
1916	53	1926	16	1936	33	합계	954명
1917	39	1927	25	1937	22		
1918	47	1928	24	1938	29		
1919	11	1929	27	1939	23		
1920	36	1930	11	1940	11		

50 관보는 대한제국 내각법제국에서 1910년까지 발행한 『관보』와 『조선총독부관보』를 포함한다.

51 『관보』 제4125호(1908년 7월 14일) “감옥사무 개시기에 관한 건(법부령 제10호)”

52 관보에 고시된 첫 사형수는 宋相龍이라는 인물이다. 당시에는 이름과 죄명, 집행여부를 상주한 날짜만 표시하였기 때문에 집행장소를 알 수 없다.

53 관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908~1945년 사형 집행 인원은 총 1,372명이다.

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인물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의 수를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연도	인원
		1911	29	1921	19	1931	3	1941	3
		1912	23	1922	10	1932	4	1942	18
		1913	19	1923	8	1933	9	1943	7
		1914	16	1924	1	1934	4	1944	10
		1915	8	1925	6	1935	10	1945.8	5
		1916	20	1926	10	1936	26	합계	493명 이상
		1917	6	1927	8	1937	9		
1908	10명 이상	1918	10	1928	9	1938	7		
1909	77	1919	7	1929	19	1939	10		
1910	34	1920	10	1930	4	1940	5		

1908년부터 1945년 8월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은 493명 이상이다.⁵⁴ 여기에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1908년의 경우 사형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09년 2월까지 관보 기사에는 집행감옥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집행된 사형수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의 추가자료를 통해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1908년 사형 집행 대상 중 의병으로 활동한 李康季, 許薦, 李致玉, 李今玉, 李德慶, 金景云, 金雙奉은 당시 경성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鄭錫萬, 安慶肅, 金法允도 의병으로 추정된다.⁵⁵ 그 외에 집행감옥을 추정할 수 없는 37명 중 경성감옥에서 사형

54 493명의 명단은 부표로 소개하였다.

55 鄭錫萬, 安慶肅은 李今玉((1864~1908, 애국장)과 함께 경기도 포천·양주군 등

된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93명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수치는 서대문·대구·평양의 세 감옥에서 사형 집행된 인원의 35.93%에 해당한다. 집행감옥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그 비율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동일 기간 대구에서 집행된 인원이 413명(30.1%), 평양에서 집행된 인원이 422명(30.76%)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곳이라 할 수 있다.⁵⁶

매년 평균 12.9명씩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강점 이전 및 직후의 시기에 사형자가 많았으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연도별 사형 집행 수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1909년을 정점으로 1915년까지 점차 감소하고 이후 10명 내외의 인원을 유지하는 경향이다. 다만 1921년, 1929년, 1936년, 1942년에는 사형 집행 인원이 일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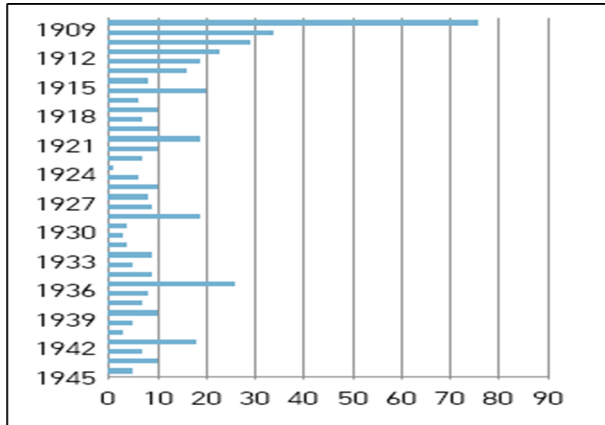
초기에 사형 집행인원이 많은 것은 이 시기 의병활동이 왕성했으며, 사법권을 확보한 일본이 ‘엄격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의병에 대한 재판에서 높은 확률로 사형을 판결했다. 1906~1910년 진행된 의병에 대한 재판 중 사형이 선고된 비율이 12.78%에 달했다.⁵⁷

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였고, 1908년 10월 30일 경성감옥에서 교형에 처해졌다. 金法允은 李德慶((1883)~1908, 애국장)과 함께 1907년 12월 의병부대를 결성하고 충남 공주 일대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1908년 12월 2일 이덕경과 함께 교형에 처해진 인물이다(「韓用成 등 판결문」(경성공소원, 1908년 10월 2일)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상업 피고 이덕경 26세 등 판결문」,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67쪽).

56 총 1,372명의 사형 집행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 소	서대문	대구	평양	미상·기타	합계
인 원(명)	493	413	422	44	1,372
비 율(%)	35.93%	30.1%	30.76%	3.21%	100%

57 김항기, 앞의 논문, 2018, 25쪽. 총 915건 중 사형이 선고된 재판은 117건이다.



〈그림 4〉 연도별 사형집행 인원(1909~1945)

의병들은 『형법대전』⁵⁸에 근거해 처벌을 받았는데, 주로 내란죄, 강도죄, 살인죄 등의 적용을 받았다. 1908~1910년 경성감옥 사형수 중 ‘강도죄’를 언도받은 비율이 가장 높다.⁵⁹ 『형법대전』 제593조에 의하면 무기를 휴대하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주범과 종범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⁶⁰ 일제는 의병들이 군수품 및 군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강도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사형에 처했던 것이다.⁶¹

58 『형법대전』은 1905년 5월 29일 법률 제2호로 반포 시행되었다.

59 1907년 8월부터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崔文鳳, 의진에서 활동한 신창룡이 강도살인죄를 언도받고, 구한국군 육군 장교 출신으로 강화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수차례 교전을 벌인 이능권도 강도 및 모살죄 언도를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

60 국회도서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 1971, 214~215쪽. 일본 형법은 강도죄라 해도 인명을 해진 경우에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191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형사령』을 발표해 일본 형법 등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독립운동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의도로 강도·살인 등에 대해서는 『형법대전』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켰다(김항기, 앞의 논문, 2020, 48쪽).

61 일제는 의병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내란죄로 처리하지 않고, 강도·살인 등

1907년 이래 들불처럼 일어난 의병활동은 1909년 '남한폭도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크게 위축되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입지는 점차 줄어 국외로 망명하는 등 독립운동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자연스럽게 사형 건수도 줄어들었다. 또한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 형사령」을 제정하여 일본 형법에 의해 형사사건을 취급하게 되었고, 이후 살인이 동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연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1909년을 정점으로 사형 집행인수가 계속 감소한 것은 이러한 정황과 관련이 있다.

이후 1916년, 1921년, 1929년, 1936년, 1942년에 일시적으로 20명 내외로 증가하였을 뿐 매년 10명 내외의 집행인원을 유지했다. 그 중 1921년에는 의군단의 이인준·모인화, 광복회 채기중·임세규·김경태, 철혈광복단 한상호·임국정·윤준희가 포함되어 있다. 3·1운동 이후 국외에 기반을 둔 무장투쟁이 활발해지고, 이들이 국내활동 중 체포·사형되면서 사형인 수가 일시 증가한 것이다. 1929년에도 만주지역을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한통의부 이수홍·유태수, 대공단 김무열, 국내에서 항일비밀결사 장총단을 조직해 활동한 마남룡·김석규가 포함되어 있다.

1936년에는 2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 중 18명은 동일한 사건으로 묶여 있다. 주현갑·이동선 등 제5차 간도 공산당 관련 인사들이다.⁶²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살인, 살인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7월 21일과 22일 양 일에 걸쳐 집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사형 중 최다 인원을 집행한 사례이다.

의 常事犯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의병의 거병 의미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에 대해서는 김항기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62 『조선총독부관보』 제2866호(1936년 8월 1일).

1942년에도 18명의 비교적 많은 인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 14명이 ‘白白敎 사건’ 관련자들이다.⁶³ 백백교 사건은 교주 전용해의 지시에 따라 유사종교 백백교 간부들이 교인 등 314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건이다. 1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7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하루 집행인원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5. 정치·사상범 비율 검토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493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거나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 형법 범죄자 즉 강도, 살인, 간통 및 강간, 모살, 방화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백교 사건처럼 유사종교와 얽혀 발생한 대규모 살인사건 관계자도 있고, 경제적 목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식민지 치하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분명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활동한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일제가 사형제도를 독립운동가 탄압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중 독립운동과 관련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형수 중 국가가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한 대상 즉 독립유공자의 비율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493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은 총 92명, 18.66%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장 3명, 대통령장 3명, 독립장 26명, 애국장 6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사형 집행 연도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3 『조선총독부관보』 제4657호(1942년 8월 6일).

〈표 2〉 서대문형무소 사형자 중 독립공자 현황

연도	훈격별				비고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1908	이강년, 허위		김경운	이치옥, 이금옥, 이덕경, 김쌍봉	7명
1909		이은찬, 이인영	오상원, 신창룡, 이능한, 김수민	한창렬, 이완보, 김순옥, 김구학, 고악규, 김태산, 정재근, 김용기, 김현국, 배창근, 이기석, 박홍석, 신석규, 신현규, 원일상, 이성덕	22명
1910		이재명	강윤희, 엄해윤, 정용대, 추삼만, 이교영	김영권, 박광천, 유덕삼, 우윤구, 김영준, 곽이용, 김운익, 이상근, 정영운, 이근배, 조운식, 권운택, 조영환, 황순팔, 맹달섭, 신대룡	22명
1911			정춘서	정홍준, 박화준, 김연세, 박복인, 정경태	6명
1912				김응문, 서운선, 백수영	3명
1913				박문술	1명
1914				김희명	1명
1917			김종철	김종근	2명
1918				염재균	1명
1920	강우규				1명
1921			채기중, 임세규, 김경태, 한상호, 임국청, 윤준희	이인준, 모인화	8명
1922				이억준, 석기호, 이응수	3명
1923			김도원, 문창학, 김학섭	채경옥	4명
1924				최경호	1명
1927			송학선		1명
1929			이수홍, 유택수	마남룡, 김석규, 김무열	5명
1931				이재우	1명
1932				최효일	1명
1933			신광삼		1명
1937			엄순봉		1명
합계	3명	3명	26명	60명	92명

이들에게 선고된 죄목을 보면 내란도 있고, 폭발물취체벌칙 위반,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보안법 위반·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치안유지법 위반과 같은 특별법 위반 사항도 표시되어 있지만 강도, 강도살인, 고살, 모살, 수도도주, 방화, 강도살상인, 살인, 강도치사, 주거침입, 공갈, 공갈미수, 살인미수, 강도미수, 협박, 시체유기, 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 건조물손괴와 같은 일반 형사법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여러 가지 죄목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수홍의 경우가 가장 많아 총 8개의 죄목이 명시되어 있다.⁶⁴

정치적 성격을 갖는 내란과 특별법 위반이 명시된 경우를 살펴보면 내란죄의 경우 이강년·허위를 포함한 의병 14명이며,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은 강우규·문창학·김학섭이 해당된다.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자는 13명, 보안법 위반 2명, 치안유지법 위반 3명이다. 국가로부터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은 유공자 중에서만 따져보아도 특별법 위반자의 수는 많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많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다. 보안법은 최고 형량이 2년이였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정치적 변혁을 목적으로 한 다수 공동의 행위’를 좀 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령 제7호로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징역 10년형을 최고형으로 한다. 1925년에 공포된 「치안유지법」도 처음에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형이었다. 인명 살상이 동반되지 않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사형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독립운동 사실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

64 이수홍 사형 집행 보고에는 치안유지법 위반, 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 주거침입, 공갈미수, 살인, 살인미수, 강도미수, 강도살인이 명시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650호(1929년 3월 5일) ; 「이수홍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8년 7월 10일)).

해진 것은 1928년이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결사의 임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본국에서는 공산주의자에 대해 주로 적용한 이 법률을 한국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용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치안유지법」 적용자는 계속 늘어났다.⁶⁵ 그러나 「치안유지법」 위반만으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⁶⁶

사형자 중 특별법 위반자가 많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일제가 이들의 행위를 강도·살인과 같은 일반 형법범으로 폄하하여 처리했기 때문이다. 의병 활동을 강도·살인·방화 등으로 취급하였듯이, 강점 후 무장 투쟁이나 의열투쟁에 대해서도 강도·살인·강도치사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살인’ 행위만을 강조해 항일운동의 목적과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왜곡된 판결은 그대로 세간에 전달되었다. 1921년 말 연내 집행된 서대문형무소 사형수에 대한 통계를 소개하는 기사를 보면, 19명 중 6명만을 독립운동 관계자로 소개했다. 실제로는 한상호·임국정·윤준희·채기중·김경태·임세규·이인준·모인화까지 총 8명이 해당한다.⁶⁷

65 『동아일보』 1929년 12월 29일, “말없는 철문 타령(1)” 및 1931년 7월 23일, “사설-수인의 격증”

66 일본 본국에서는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으며, 한국에서는 단 1명(주현갑)의 사례만이 확인된다.

67 『동아일보』 1921년 12월 27일, “노화한 19의 생명, 서대문감옥의 사형 통계, 독립운동 관계자는 6명” 기사에서 정치범으로 언급한 이는 채기중·김경태·임세규·한상호·임국정·윤준희이며, 그 외에 이인준·모인화·김관제에 대해서는 ‘얼마간 정치범에 관계가 있는 듯’ 하다고 기술했다. 이인준·모인화는 의군단원으로 밀정을 처단하고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만, 김관제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죄목만으로는 특정 사형수가 일반 형법범인지 정치·사상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서훈된 인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형 집행이 많았던 1908년부터 강점 초기까지 의병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주목해야 한다.⁶⁸ 이와 관련해 1909년 9월 22일에서 23일에 걸친 대규모 사형 집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9월 22일에 10명, 다음날인 23일도 1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⁶⁹ 이들에게 내려진 죄목은 강도죄였다. 그런데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보면 이들이 본래 ‘내란범’으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신문기사로 확인되는 이름은 朴允成, 權尙浩, 金敬出, 金德化, 李永根, 李元奎, 金寧濟, 崔石畝의 8명이지만 20여명의 사형수는 동일한 사건으로 체포된 인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때는 사건 단위별로 진행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날 집행하였기 때문이다.⁷¹ ‘경성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의병의 수효가 이십 명이나 된다더라.’는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서 언급한 20명은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⁷² 그러나 일부 신문과 사형 집행 기사 외에 이들의 활동을 추정·증명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형 집행 기사에도 이름과 죄목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 식별의 주요 수단인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황적 증거에 따라 그들이 일제에 의해 ‘강도’로 폄훼된

68 105인 사건으로 경성감옥에 수감된 김구는 당시 수감자의 80%가 의병이었다고 서술할 정도였다.

69 『조선총독부관보』 제4493호(1909년 9월 30일).

70 『황성신문』 1909년 3월 4일, “내란범 선고”

71 1921년 이수홍, 유택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홍과 유택수는 경성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유택수만 상고하고 이수홍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이수홍은 1928년 7월 10일이 판결 확정일이며, 유택수는 동년 12월 20일로 차이가 있음에도 사형은 1929년 2월 27일에 동시에 집행되었다.

72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15일, “死刑何多”

의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23년 5월 8일 절도·황령·강도살인의 죄목으로 사형이 집행된 崔東元은 1922년 8월 만주에서 조직된 대한통의부의 재무부원 최동원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⁷³ 사형 집행 기사에 기재된 주소가 ‘중국 간도 연길현 지린사 의란구 중평’으로 대한통의부 활동 지역에 포함되는 점이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⁷⁴ 또한 ‘사람을 죽이고 현금을 강탈했다.’라는 사법 당국의 발표 내용은 적의 통치기구를 공격하고 친 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한다는 국내외 무장투쟁단체의 일반적 활동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⁷⁵

물론 서로 다른 자료에 명시된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소상한 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조직을 감추고 보호하려 했던 독립군과 ‘살인’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며 정치범을 常事犯으로 폄하·왜곡하려 했던 당대의 현실 사이에 숨어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죄명만으로 미서훈된 사형수를 일반 형법범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죄목에 「치안유지법」 위반 등 정치적 성격의 법률 위반자도 빼놓을 수 없다. 1936년 주현갑·이동선·고하경, 1938년 송창죽, 1945년 권영벽·이제순(이동석)·지태환·이동걸은 죄명에 「치안유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주현갑 이하 2명은 제5차 간도공산당 사건 관계로 체포되었다. 이들의 사형 집행 기사에는 ‘치안유지법 위반’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남만 한족통일회 결의사항 및 직원 각 포고문 입수에 대한 건」,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1984, 431쪽.

74 대한통의부는 남만주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자치조직을 설치하고 활동했다(반병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20~321쪽).

75 『매일신보』 1923년 5월 9일, “최동원 사형 집행, 서대문형무소의 개명 후 처음, 죄인은 16분 만에 숨져”

주현갑만 「치안유지법」이며 이동선·고하경은 살인·살인교사·강도미수·소요·강도·방화의 죄가 함께 선고되었다. 사형 집행 기사에 ‘강도살인’, ‘살인’ 등의 죄명으로 명시된 나머지 15명 역시 실제 판결문을 보면 치안유지법을 포함하여 여러 죄명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⁷⁶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된 송창죽과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권영벽·이제순·지태환·이동걸 모두 「치안유지법」 위반을 포함한다.⁷⁷ 운동방략이나 사상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이들 모두 일제를 축출하고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활동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소개한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이른바 ‘정치·사상범’은 136명이며, 집행인원의 27.59%에 해당한다. 물론 이 수치는 사형수 개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통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독립운동 사실에 대한 일제의 의도적 은폐와 자료적 한계는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6. 맺음말

일제는 한반도 안에 감옥을 짓고 그 안에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통해 반일세력을 처단하고 더욱 강력한 식민지 권력을 유지했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표 감옥인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사형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규명했다.

먼저 사형 집행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와 절차를 검토했다. 일제는 강점 이전인 1908년 무렵부터 한국의 사법권을 확보하고 여러 법제를 통

76 『조선총독부관보』 제2866호(1936년 8월 1일) ; 「주현갑 등 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36년 2월 24일).

77 이들의 이름은 幸村永壁, 芝山東石, 水口泰環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조선총독부관보』 제5436호(1945년 3월 22일)).

해 사형 판결에서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통제했다. 이를 통해 사형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특수 상황을 구실로 일본 형법보다 강력한 『형법대전』의 일부 조항을 상당기간 존속시켰으며 「치안유지법」 범위도 독립운동 전체로 확대 적용하였다. 사형제도를 항일세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특히 사형 집행 후 시신의 인수·이동·장례까지 세밀히 규정·관리함으로써 사형 집행이 또 다른 반일정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 점도 주목된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도 규명했다. 1908년 경성감옥 개소 당시 부지의 동북쪽에 위치했던 사형장은 1922년 감옥의 확장과 옥사 신축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으며, 초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개의 교수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보』를 통해 확인한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 인원은 493명 이상이다. 이는 1908~1945년 사형 집행 인원의 약 36%에 해당하며, 전국 감옥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1909년의 사형 집행 인원이 7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 중 상당수가 의병이다. 1909년을 정점으로 사형 집행인원은 점차 감소해 1915년 이후로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보이지만, 3·1운동 전후부터 의열활동과 국내외 무장투쟁의 추이에 따라 사형 집행도 일시적인 증가를 보였다.

중요한 점은 그 안에 많은 정치·사상범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도 있으나,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이다. 본 연구는 사형 집행을 매개로 한 독립운동가 연구의 단초로서, 앞으로 자료적 보완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사형수 명단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대문형무소를 넘어 대구·평양형무소의 사형 집행

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된다면 일제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탄압에 대한 또 다른 역사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개벽』(7호, 1921)
『관보』(내각법제국, 1908~1910)
『朝鮮勅諭令輯覽』下(조선총독부 편, 1940)
『조선총독부관보』(조선총독부, 1910~1945)
『조선총독부통계연보』(조선총독부, 1911~1943)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국회도서관, 1971)
「이수홍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28. 7.10.)
「韓用成 등 판결문」(경성공소원, 1908. 10. 2.)
「경성감옥서 신축 전경 평면도」(국가기록원 소장)
「서대문감옥 배치도」(국가기록원 소장)
-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반병율,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9: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 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서운재 역, 『일제강점기 조선 행형의 이야기』, 북트리, 2020.
-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자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2016.
김항기, 「1906~1910년간 일제의 의병 판결 실태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61, 2018.
_____, 「일제강점초기(1910~1915) 총독부재판소의 의병판결과 그 성격」, 『사림』 72, 2020.
노혜경, 「한말 행정권의 남용과 국가체제 모순」, 『역사와 실학』 68, 2019.
이덕인, 「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형사정책』 25-2, 2013.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통제 메카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

와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식민지시기 형사처벌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55, 1999.

전병무,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사형 통계 자료와 사형 집행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40, 2021.

〈부록〉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자 명단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4204	李康年	李康季	내란		대한민국장
4214	許蔦		내란		대한민국장
4224	李致玉		강도		애국장
4233	鄭錫萬		강도		
4233	李今玉		강도		애국장
4233	安慶肅		강도		
4262	李德慶		강도살인		애국장
4262	金法允		강도		
4262	金景云		강도		독립장
4262	金雙奉		고살		애국장
4291	韓昌烈		강도		애국장
4325	李完甫		강도살인	1909.03.09	애국장
4325	金順玉		강도살인	1909.03.09	애국장
4325	金龜鶴		강도살인	1909.03.09	애국장
4336	申致均		투구살인	1909.03.22	
4342	高翊奎		강도	1909.03.30	애국장
4351	朴長建		강도살인	1909.04.07	
4371	崔錫一		모살	1909.05.01	
4376	金泰山		고살	1909.05.05	애국장
4381	李大賢		강도살인	1909.05.14	
4398	鄭順甫		모살	1909.06.03	
4401	吳相元		내란	1909.06.08	독립장
4407	金昌熙		고살	1909.06.14	
4407	李汗成		강도	1909.06.16	
4407	安春發		강도	1909.06.16	
4407	柳鳳石		강도	1909.06.16	
4408	李殷瓚		내란	1909.06.16	대통령장
4410	金用西		폭행도주	1909.06.18	
4418	鄭在根		고살	1909.06.28	애국장
4426	金龍基	鳳基, 鳳奎	강도살인	1909.07.03	애국장
4434	金顯國		내란	1909.07.06	애국장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4436	裴昌根		모살	1909.07.17	애국장
4436	李基石		모살	1909.07.17	애국장
4446	宋興善		모살	1909.07.24	
4449	金泰元		고살	1909.07.29	
4459	徐聖天		강도살인	1909.08.10	
4463	申昌龍		강도살인	1909.08.16	독립장
4468	朴弘錫		강도살인	1909.08.24	애국장
4468	金元俊		모살	1909.08.24	
4474	韓聖浩		강도	1909.09.04	
4489	李麟榮		내란	1909.09.20	대통령장
4493	金基業		강도	1909.09.22	
4493	金順伊		강도	1909.09.22	
4493	李順昌		강도	1909.09.22	
4493	張學瑞		강도	1909.09.22	
4493	黃千一		강도	1909.09.22	
4493	金喜俊		강도	1909.09.22	
4493	金基順		강도	1909.09.22	
4493	李平山		강도	1909.09.22	
4493	任聖敏		강도	1909.09.22	
4493	許長水		강도	1909.09.22	
4495	金相熙		강도	1909.09.23	
4495	車昌實		강도	1909.09.23	
4495	金順億		강도	1909.09.23	
4495	朴允成		강도	1909.09.23	
4495	李永根		강도	1909.09.23	
4495	金寧濟		강도	1909.09.23	
4495	崔石芻		강도	1909.09.23	
4495	鄭德化	金德化	강도	1909.09.23	
4495	權尙浩		강도	1909.09.23	
4495	李元圭	李元奎	강도	1909.09.23	
4495	嚴昌道		강도살인	1909.09.25	
4496	李泰仁		강도	1909.09.25	
4496	崔龍成		강도	1909.09.25	

190 서울과 역사 제108호(2021.6)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어부
4496	俞昌守		강도	1909.09.25	
4496	金泰龍		강도	1909.09.25	
4496	宋弘奎		강도	1909.09.25	
4496	金德圭		강도	1909.09.25	
4496	金興龍		강도	1909.09.25	
4496	朴三俊		강도	1909.09.25	
4499	鄭弘成		강도강간	1909.09.30	
4523	申石奎		모살	1909.10.15	애국장
4518	金在鎬		강도	1909.10.19	
4518	李允明		강도	1909.10.19	
4518	具萬成		강도살인	1909.10.21	
4518	申鉉九		강도살인	1909.10.21	애국장
4518	元逸常		고살	1909.10.21	애국장
4547	劉秉奎		살인	1909.12.01	
4547	李能漢		강도, 모살	1909.12.02	독립장
4552	李永培		강도살인	1909.12.07	
4562	金秀敏		내란	1909.12.17	독립장
호외	李聖德		강도, 모살	1909.12.20	애국장
호외	金熙國	金熙國	강도살인	1909.12.20	
4573	姜允熙		내란	1909.12.30	독립장
4573	李明俊		강도, 수도도주	1909.11.30	
4573	嚴海潤		내란, 수도도주	1909.11.30	독립장
4573	金永權		살인	1909.11.30	애국장
4589	鄭用大		내란	1910.01.26	독립장
4605	金明秀		강도	1910.02.08	
4608	孫昌業		강도, 강도상인	1910.02.16	
4611	朴光天		살인	1910.02.18	애국장
4612	金元三		강도강간 강도상인 강도	1910.02.21	
4619	金成玉		강도, 강도살인	1910.02.28	
4622	劉德三	柳德三	강도, 모살	1910.03.02	애국장
4622	金順西		모살	1910.03.02	
4626	禹潤九		강도, 모살	1910.03.07	애국장
4626	金永俊		내란	1910.03.07	애국장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4630	秋三萬		강도, 모살	1910.03.14	독립장
4630	郭伊用		강도, 강도살인, 방화 등	1910.03.14	애국장
4631	盧春化		강도살인, 방화	1910.03.16	
4637	金雲益		강도, 방화, 모살	1910.03.18	애국장
4637	李聖根		강도, 모살	1910.03.18	애국장
4640	鄭永雲		강도살인	1910.03.23	애국장
4640	李敦永		내란	1910.03.23	독립장
4651	李根培		강도살인	1910.04.08	애국장
4663	趙雲植		내란	1910.04.20	애국장
4675	鄭致先		죄수도주	1910.05.06	
4675	權春化		죄수도주	1910.05.06	
4678	權雲澤		강도살인, 강도상인, 강도 등	1910.05.11	애국장
4698	俞致學		강도, 강도살인	1910.06.01	
4705	李順範		강도살인	1910.06.10	
4716	趙永煥		강도살인	1910.06.22	애국장
4716	李啓一		강도살인, 강도상인	1910.06.22	
4716	朴復陽		강도살인, 강도상인	1910.06.22	
4740	黃順八		강도, 모살	1910.07.08	애국장
4742	孟達燮		내란, 강도	1910.07.18	애국장
4750	劉元燁		모살, 절도	1910.08.01	
4764	金黃龍		모살	1910.08.15	
21	申大龍		강도, 모살	1910.09.14	애국장
31	李在明		모살미수, 고살	1910.09.30	대통령장
93	梁相均		강도, 강도강간	1910.12.12	
123	金聖元		강도살인, 강도	1911.01.20	
129	邊榮植		모살	1911.01.31	
166	趙昇鳳		간통, 모살	1911.03.09	
166	林姓女		간통, 모살	1911.03.09	
167	金姓女		친속살사	1911.03.11	
177	郭先奉		강도, 강도상인, 고살, 구상추포	1911.03.17	
205	金泰奎		강도살인	1911.05.04	
220	周日元		죄수도주	1911.05.20	
221	金鳳俊		강도살인, 방화, 강도	1911.05.24	

192 서울과 역사 제108호(2021.6)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232	鄭弘俊		모살, 강도	1911.06.06	애국장
246	朴華俊		모살, 강도, 강도절주	1911.06.17	애국장
246	鄭春瑞		강도, 강도절주	1911.06.20	독립장
249	金斗洙		고살, 강도	1911.06.23	
272	金彦世		방화, 강도, 강도살인	1911.07.15	애국장
288	申卿雨		강도, 강도상인, 방화	1911.08.07	
302	韓昌洙		강도, 강도살인	1911.08.24	
302	金秀月		강도, 강도살인	1911.08.24	
326	文春興		강도살인	1911.09.22	
347	黃啓淳		강도살인	1911.10.18	
347	咸在實		강도살인	1911.10.18	
352	金聖權		강도살인	1911.10.23	
352	安海龍		강도살인	1911.10.23	
352	尹소사		간통, 모살	1911.10.23	
362	朴福仁		모살, 강도	1911.11.02	애국장
369	李建永		사기취재, 고살, 강도, 강도살인	1911.11.13	
376	鄭敬泰		강도, 방화, 고살	1911.10.22	애국장
397	金秉郁		간통, 살인	1911.12.16	
397	崔姓女		간통, 살인	1911.12.16	
420	安培根		간통, 모살	1911.01.18	
427	朴姓女		모살	1912.02.26	
432	林順釗		간통, 모살	1912.02.05	
437	金應文		강도, 고살	1912.02.08	애국장
441	韓致芻		강도, 강도살인, 방화	1912.02.15	
441	李成彬		간통, 모살	1912.02.15	
441	金五房		간통, 모살	1912.02.15	
456	金黑用		강도살인, 사기취재미수	1912.03.02	
457	秋致元		강도살인, 사기취재미수	1912.03.02	
462	文鐘環		간통, 모살미수, 고살, 절도	1912.03.09	
468	李範龍		간통, 모살	1912.03.13	
482	徐云先		강도살인	1912.04.02	애국장
505	鄭昌奎		모살	1912.04.29	
515	安鍾口		모살	1912.05.14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536	李姓女		간통, 姦殺本夫	1912.06.06	
556	黃姓女		간통, 모살	1912.06.28	
556	沈洪澤		간통, 모살	1912.06.28	
557	姜鳳男		강도살인	1912.07.01	
63	朴應熙		강도살인	1912.10.10	
63	李弘石		강도살인	1912.10.10	
66	白琇瑛		강도살인	1912.10.14	애국장
107	山口利平		강도살인 강도상인 절도	1912.12.03	
117	金成根		강도, 강도상인, 강도강간	1912.12.13	
125	武井ナヲ		모살	1912.12.25	
147	金德源		강도살인	1913.01.24	
164	柳敬先		강도살인	1913.02.14	
178	李福男		강도살인	1913.03.03	
178	韓光淑		강도살인	1913.03.03	
189	金姓女		모살	1913.03.15	
281	張世英		강도살인	1913.07.03	
303	朴文術		살인, 강도, 도주	1913.08.26	애국장
303	鄭錫崇		살인, 사체유기	1913.08.26	
329	金達鎬		강도살인	1913.08.29	
329	尹朔重		사기취재 살인	1913.08.29	
372	金仁協		살인, 사체유기	1913.10.20	
372	李伊順		살인교사	1913.10.20	
375	金順玉		강도살인	1913.10.24	
389	李章欽		살인	1913.11.12	
389	宋古分		살인	1913.11.12	
418	李聖局		강도살인	1913.12.15	
418	朴永信		강도살인	1913.12.15	
418	金萬奉		강도살인	1913.12.15	
418	高順景		강도살인	1913.12.15	
438	崔木石		살인	1914.01.10	
465	金今俊		강도살인	1914.02.16	
521	金喜明	金炳一	강도방화, 살인	1914.04.23	애국장
554	李周鳳		살인, 절도	1914.06.03	

194 서울과 역사 제108호(2021.6)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571	朱德順		강도살인	1914.06.22	
578	金順植		강도살인	1914.06.29	
581	徐老成		강도살인	1914.07.06	
589	盧伯三		강도살인	1914.07.11	
598	金在寬		강도살인	1914.07.23	
599	李百龍		강도살인	1914.07.25	
599	金泰山		강도살인	1914.07.25	
627	楊甫然		살인	1914.08.27	
632	李光云	李光雲	강도살인	1914.09.01	
632	崔鳳梧		살인, 사체유기	1914.09.01	
632	李姓女		살인, 사체유기	1914.09.01	
689	李元一		절도, 강도살인	1914.11.12	
741	宋榮鉢		살인	1915.01.19	
840	李貴男		강도살인	1915.05.19	
844	高三萬		강도살인	1915.05.24	
897	沈大一		죄명 미기재	1915.07.21	
908	金丙道		강도살인	1915.07.15	
908	張基英		강도살인	1915.07.15	
936	嚴漢季		살인, 사체유기	1915.09.09	
1017	吳春福		강도, 강도상인, 상해	1915.12.17	
1050	辛處子		살인	1916.01.29	
1075	姜姓女		살인	1916.03.02	
1075	趙秉憲		살인, 사체유기	1916.03.02	
1081	池姓女		살인	1916.03.07	
1091	元姓女	元稷峴	살인	1916.03.20	
1091	趙信行		살인	1916.03.20	
1091	朴仁順		살인	1916.03.20	
1121	王鎭亭		강도살인	1916.04.26	
1121	藩四永		강도살인	1916.04.26	
1125	楊應林		살인	1916.05.01	
1155	裴聖烈		강도, 강도살인	1916.06.03	
1155	鄭仁植		강도, 강도살인	1916.06.03	
1207	崔鳳善		강도살인	1916.08.05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1271	李道塞		강도살인	1916.10.20	
1271	劉相鎬		강도살인	1916.10.20	
1271	安榮喆		강도살인, 절도	1916.10.20	
1299	李治懇		강도살인	1916.11.27	
1299	金炳浩		강도살인	1916.11.27	
1299	林昌協		강도살인	1916.11.27	
1328	岩佐米市		살인	1917.12.21	
1414	金鍾根		강도, 살인, 방화, 강도상인	1917.04.19	애국장
1414	金鍾鐵		강도, 살인, 방화, 강도상인	1917.04.19	독립장
1447	金仁植		강도살인	1917.05.26	
1499	沈奇順		살인	1917.07.25	
1499	李英		살인	1917.07.25	
1502	白氏		살인	1917.07.28	
1723	金甲奉		강도살인	1918.04.30	
1724	劉觀曾		살인	1918.05.02	
1724	金姓女		살인	1918.05.02	
1734	李錫俊		강도치사	1918.05.14	
1756	崔氏		살인	1918.06.08	
1800	廉才君		살인	1918.07.09	애국장
1845	姜千		살인	1918.09.21	
1845	黃氏		살인	1918.09.21	
1913	長坂七太郎		강도살인 등	1918.12.14	
1924	金東鉉		살인	1918.12.26	
1961	金一權		강도살인	1919.02.15	
2018	鄭言年		살인	1919.04.28	
2052	都野川義雄		강도살인, 문서위조행사	1919.06.09	
2060	韓亨敦		강도살인	1919.06.17	
2065	安順三		살인	1919.06.23	
2065	申同伊 (鄭禹善 처)		살인	1919.06.23	
2080	辛學喜		강도살인	1919.07.11	
2254	鄭根賢	丁根賢	문서위조행사, 강도살인 등	1920.02.10	
2319	丁奎晚		가택침입, 살인	1920.04.27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어부
2352	李汶遠		강도살인	1920.06.08	
2380	安龍德		강도살인	1920.07.08	
2400	趙昌奎		강도살인	1920.07.29	
2407	朴龍鉉		강도살인	1920.08.11	
2415	金和俊		가택침입, 강도살인	1920.08.20	
2426	孫振財		주거침입, 강도살인	1920.09.02	
2426	鍾振聲		주거침입, 강도살인	1920.09.02	
2502	姜宇奎		폭발물추체별척위반, 살인	1920.11.29	대한민국장
2551	金氏 (李淳瑞 처)		살인	1921.02.05	
2551	蔡麟植		강도, 살인	1921.02.05	
2551	李宗勉		주거침입, 강도살인	1921.02.05	
2680	金寬濟		강도살인, 사체유기, 문서위조	1921.07.07	
2684	朴基成		살인, 사체유기	1921.07.12	
2684	李仁俊		제령제7호위반, 살인, 강도치사	1921.07.09	애국장
2684	毛仁華		제령제7호위반, 살인, 강도치사	1921.07.09	애국장
1698	林聖弼	李仁華	주거침입, 강도치사, 살인	1921.07.26	
2713	蔡基中	小夢	살인, 주거침입, 보안법 위반 등	1921.08.12	독립장
2713	林世圭	鳳柱, 東根	살인, 주거침입, 보안법 위반 등	1921.08.12	독립장
2713	金敬泰	永根	살인, 주거침입, 강도	1921.08.12	독립장
2721	韓相浩		살인, 강도치사, 제령제7호위반	1921.08.25	독립장
2721	林國楨		살인, 강도치사, 제령제7호위반	1921.08.25	독립장
2721	尹俊熙		살인, 강도치사, 제령제7호위반	1921.08.25	독립장
2723	金世景		살인, 강도살인	1921.08.27	
2741	池蓮興		강도, 살인	1921.09.22	
2805	李樹芳		살인, 강도치사, 사체유기	1921.12.08	
2805	劉吉昌		살인, 강도치사, 사체유기	1921.12.08	
2810	許姓女		살인	1921.12.15	
2864	金昌坤		살인, 사체유기	1922.02.23	
2875	李鶴善		살인교사	1922.03.04	
2875	姜姓女		살인	1922.03.04	
2892	李靑山		가택침입	1922.03.27	
2892	孫香芝		가택침입	1922.03.27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2905	李億俊		제령제7호위반 주가침입 살인 등	1922.04.15	애국장
2905	石基浩		제령제7호위반 주가침입 살인 등	1922.04.15	애국장
2905	李應洙		제령제7호위반 주가침입 살인 등	1922.04.15	애국장
2923	李致今	致兼	살인 사체유기	1922.04.21	
2923	李曜植	聖天	살인 사체유기	1922.04.21	
3199	金道源	仁俊	제령제7호위반 강도 등	1923.04.06	독립장
3230	崔東元		절도, 횡령, 강도살인	1923.05.08	
3282	安敬文		살인 절도	1923.06.30	
3368	朴準璇	先玉	강도살인	1923.10.26	
3411	蔡京玉	崔景鈺	제령제7호위반, 살인 등	1923.12.17	애국장
3426	金學燮	金光	강도살인 폭발물취체벌칙 등	1923.12.20	독립장
3426	文昌學	文彦俊	강도살인 폭발물취체벌칙 등	1923.12.20	독립장
3426	崔京鎬		살인 제령제7호위반	1923.12.27	애국장
3628	劉順德	成雲	살인 사체유기	1924.09.09	
3733	林奇福	居北	강도치사	1925.01.20	
3749	金學勸		가택침입 강도, 강도치사 등	1925.02.10	
3749	李建時		가택침입 강도, 강도치사 등	1925.02.10	
3749	黃應休		가택침입 강도, 강도치사 등	1925.02.10	
3954	姜壬辰	昌淳	강도살인 방화	1925.10.12	
3961	鄭萬權		강도치사	1925.10.22	
4119	金長庚		강도살인 사기	1926.05.08	
4152	趙丙南		주거침입 강도살인 등	1926.06.17	
4152	太周極		주거침입 강도살인 등	1926.06.17	
4157	崔岩伊	錫鍾	강도살인	1926.06.22	
4179	成儀鳳		살인	1926.07.17	
4224	場德三	張德三	살인	1926.09.04	
4224	片貞俊		살인	1926.09.04	
4232	李心石		강도살인	1926.09.21	
4299	崔陽成		살인미수방조, 살인	1926.12.11	
4299	朴於福女		살인미수, 살인방조	1926.12.11	
119	金日松		살인	1927.05.18	
119	黃一千		살인	1927.05.18	
119	方奉俊		살인	1927.05.18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120	宋學先		살인	1927.05.19	독립장
125	權賢洙		강도, 강도살인, 강도미수	1927.05.25	
177	印宗煥		강도살인	1927.07.23	
198	李炳鎬		가택침입, 절도, 강도 등	1927.08.17	
237	成再奉		가택침입, 절도, 강도살인	1927.10.05	
399	朴順弼		강도살인	1928.04.23	
399	金弘成		강도살인	1928.04.23	
408	金氏		살인, 사체유기	1928.05.04	
408	張鳳伊		살인, 사체유기	1928.05.04	
453	朴所回		강도살인	1928.06.25	
460	沈相仁		가택침입, 강도, 강도살인	1928.07.04	
503	王雲信		강도살인	1928.08.21	
503	孫培山		강도살인	1928.08.21	
503	于芝蘭		강도살인	1928.08.22	
623	趙命山		강도살인	1929.01.21	
628	李在弘		강도살인	1929.01.29	
650	李壽興		차인유지범 위반, 총포화약류취 채령위반 등	1929.02.27	독립장
650	柳澤秀		주거침입, 공갈미수, 살인 등	1929.02.27	독립장
679	白用奉		가택침입, 강도살인	1929.02.18	
680	馬南龍		주거침입, 강도미수, 강도 등	1929.04.04	애국장
680	金錫奎		주거침입, 강도미수, 강도 등	1929.04.04	애국장
730	朱口呂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1929.06.01	
751	尹基華		살인, 횡령	1929.06.28	
757	朴承玉		강도살인	1929.07.03	
759	崔在元		강도살인	1929.07.04	
785	金元植		가택침입, 강도, 강도치사 등	1929.08.01	
818	金武烈		살인	1929.09.13	애국장
848	南相龍		강도살인	1929.10.16	
848	南相玉		강도살인	1929.10.16	
848	金吉龍		강도살인	1929.10.16	
857	金相鶴		강도살인	1929.10.29	
888	金基準		살인, 사체유기	1929.12.10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888	姜福女		살인 사체유기	1929.12.10	
951	南玉出		살인 사체유기	1930.02.28	
951	南干蘭		살인 사체유기	1930.02.28	
1126	宋基浩		강도살인	1930.09.25	
1149	韓壽鳳		강도살인	1930.10.22	
1290	安巨ト		살인	1931.04.20	
1335	李濟宇		살인 치안유지법 위반 등	1931.06.11	애국장
1487	尹今文		강도살인	1931.12.08	
1646	禹奉鉉		살인	1932.06.28	
1692	朴重陽	朴萬陽	의사규칙위반, 사기, 살인 등	1932.08.16	
1738	崔孝一	尹長孫	치안유지법 위반, 살인 등	1932.10.12	애국장
1781	張興俊		강도살인	1932.12.05	
1909	金秉祚		살인 사기미수	1933.05.17	
1911	申光三		강도살인 살인미수, 강도 등	1933.05.17	독립장
1918	李達龍		강도살인	1933.05.25	
1918	黃三鳳	三奉	강도살인	1933.05.25	
1926	張元圭	元奎	살인 사체유기	1933.06.07	
1926	姜海春		살인 사체유기	1933.06.07	
1912	崔寶玉		살인	1933.05.18	
1912	異座首		살인	1933.05.18	
2036	金夫山	金富山	주거침입 살인	1933.10.12	
2152	金秉鎬		강도치사	1934.03.07	
2226	張明煥		강도살인	1934.06.06	
2272	全益鳳		강도살인	1934.07.27	
2696	宋三鳳		살인	1935.12.26	
2398	趙日童	一童	강도살인	1934.12.22	
2448	王芝山	一子	주거침입 강도살인	1935.03.02	
2458	朴貴丕	朴河一	강도살인 사체유기	1935.03.15	
2476	裴達伊		살인	1935.04.06	
2581	金亨祚		강도살인	1935.08.10	
2690	金甲釗		강도살인	1935.08.14	
2616	洪慶石		준강도치사	1935.09.16	
2626	柳始和		강도살인	1935.10.02	

200 서울과 역사 제108호(2021.6)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2626	金明岳	明南	강도살인	1935.10.02	
2696	宋三鳳		살인	1935.12.26	
2732	林洛奎		강도살인	1936.02.17	
2740	崔在淑		살인	1936.02.25	
2740	柳錫馨		살인교사	1936.02.25	
2768	吳天一		존속살인	1936.03.31	
2850	李命奉		강도치사	1936.07.07	
2866	周現甲		치안유지법 위반	1936.07.22	
2866	李東鮮		치안유지법 위반	1936.07.22	
2866	高河鯨		치안유지법 위반	1936.07.21	
2866	權泰山		강도살인	1936.07.22	
2866	朴東弼		강도살인	1936.07.21	
2866	劉泰順		강도살인미수교사	1936.07.22	
2866	朴翼燮		살인	1936.07.22	
2866	金光默		살인	1936.07.21	
2866	盧昌浩		살인	1936.07.22	
2866	金東弼		살인	1936.07.21	
2866	李鍾立		살인	1936.07.21	
2866	金龍辰	金龍震	살인	1936.07.22	
2866	金應洙		살인	1936.07.22	
2866	金鳳沔		살인	1936.07.22	
2866	朴金哲		살인	1936.07.21	
2866	曹東律		살인	1936.07.21	
2866	池蓮浩		살인	1936.07.21	
2866	閔昌植		살인	1936.07.21	
2877	玄興寬		강도살인	1936.08.06	
2880	李弼宰		강도살인	1936.08.11	
2892	李仁石		살인	1936.08.19	
3028	宋蒼竹		강도살인 등	1937.02.08	
3032	崔成勳		방화, 살인	1937.02.17	
3032	崔俊		방화, 살인	1937.02.17	
3036	許允燮	許俊	강도살인	1937.02.24	
3074	嚴舜奉		살인	1937.04.09	독립장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3081	皮龍雲		강도살인	1937.04.16	
3150	金仁瑀		살인	1937.07.08	
3163	文長松		강도살인	1937.07.24	
3195	楚興道		강도살인	1937.08.31	
3350	金加鳳		강도살인	1938.03.11	
3384	沈鳳學		강도살인	1938.04.16	
3388	李仁慶	仁敬	강도살인	1938.04.25	
3401	崔鶴峰		강도살인	1938.05.14	
3407	金春澤	哲鎬, 宗哲	방화	1938.05.18	
3457	崔丁七	慶訓	강도살인	1938.07.13	
3582	沈乙巳	玉順	살인	1938.12.16	
3620	金大濟		강도살인	1939.02.02	
3622	柳春發	春信	강도살인	1939.02.09	
3652	鄭有腹		강도살인	1939.03.16	
3721	金泰俊		살인	1939.06.03	
3721	李應燮		강도살인	1939.06.03	
3752	崔彦淵	崔氏	살인	1939.07.08	
3752	崔龍孫		살인	1939.07.08	
3775	金明均		강도살인	1939.08.03	
3775	梁德海		살인	1939.08.03	
3874	金鳳奎		강도살인	1939.11.09	
3902	徐英才		강도살인	1940.01.11	
3950	泉川一		강도살인	1940.03.01	
3950	成仁植		강도살인	1940.03.01	
4001	朴元福		강도살인	1940.05.07	
4014	朴泰鳳	泰水, 泰洙	살인	1940.05.29	
4437	林三千	在植	살인	1941.10.23	
4437	柳貴鶴		살인	1941.10.23	
4489	諸南奎		사문서위조행사, 살인 등	1941.12.24	
4657	李敬得		살인 등	1942.07.27	
4657	李漢宗		살인 등	1942.07.27	
4657	李昌洽		살인 등	1942.07.27	
4657	桂俊煥		살인 등	1942.07.27	

202 서울과 역사 제108호(2021.6)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4657	金珊煜		살인 등	1942.07.27	
4657	李昌文		살인 등	1942.07.27	
4657	白學殷		살인 등	1942.07.27	
4657	朴上勳		살인 등	1942.07.27	
4657	文鳳朝		살인 등	1942.07.27	
4657	白義植		살인 등	1942.07.27	
4657	金君玉		살인 등	1942.07.27	
4657	金西珍		살인 등	1942.07.27	
4657	白玉奉		살인 등	1942.07.27	
4657	鄭三禮		살인 등	1942.07.27	
4681	車昌福		강도살인	1942.08.26	
4693	姜萬順		건조물침입, 절도, 강도살인 등	1942.08.31	
4770	安秉璿		강도살인	1942.12.14	
4770	安秉球		강도살인	1942.12.14	
4809	王奎順		강도살인, 사체유기	1943.02.04	
4809	常文義		강도살인, 사체유기	1943.02.04	
4868	金元培		강도살인	1943.04.09	
4877	山濟嫻		강도살인	1943.05.01	
4891	吉田和變		강도살인, 사체유기	1943.05.15	
4968	大山載震		주거침입, 살인, 사체유기	1943.08.10	
5060	崔光石		살인	1943.12.04	
5131	宋春源		강도살인	1944.03.04	
5165	安用應珀		강도살인	1944.04.19	
5278	李濬洙		강도살인	1944.08.25	
5279	森上實儀		강도살인	1944.08.25	
5299	金山東國		강도미수, 살인	1944.09.09	
5303	金昌洛		전시강도살인口口	1944.09.28	
5327	吳三德		강도살인 등	1944.10.20	
5370	朴浩明		강도살인, 사체유기	1944.12.18	
5375	小林仁福		전시강도살인, 사체유기	1944.12.18	
5377	田光則		전시주거침입 살인	1944.12.21	
5436	幸村永口	權永壁	차안유지법위반 등	1945.03.10	
5436	芝山東石	李東石	차안유지법위반 등	1945.03.10	

관보 호수	이름	이명	죄명	집행일	공훈여부
5436	水口泰環	池泰煥	치안유지법위반 등	1945.03.10	
5436	李東傑		치안유지법위반 등	1945.03.10	
5545	宋村東彦		강도살인, 사체유기	1945.06.26	

※ 죄명이 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죄명만 기재하였음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가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집행된 사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사형장과 옥사 원형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독립운동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곳임에도 아직까지 사형 집행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형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를 다루고, 사형장의 설립과 변천, 현황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사형집행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사형의 정치적 성격을 서술하였다.

일제는 사형 판결에서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제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했다. 이를 통해 항일세력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민지적 특수성을 내세워 항일세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보다 강력히 적용하기도 했다. 특히 사형 집행 후 시신의 인수·장례 등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사형 집행이 또 다른 반일정서로 연결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은 본래 개소 당시에는 부지의 동북쪽-현재의 10·11옥사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1922년 전후 감옥의 확장 과정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현재 사형장에는 교수대가 1개만 설치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교수대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의병활동으로 인해 사형수가 많았던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관보』를 통해 확인한 사형 집행 인원은 49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는 의병이나 의열활동, 무장투쟁 등에 참여한 독립운동가가 적지 않다.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은 인물은 92명, 약 19%이며, 그 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27%가 넘는다. 이 수치는 자료적 보완과 연구를 통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살인·강도 등의 행위로 ‘치안을 위협’한 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실상 독립운동이라는 궁극의 목적은 지우고 ‘살인’ 혹은 ‘강도’라는 표면적 행위만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이에

앞으로 서대문형무소와 식민지 감옥에서 사형에 처해진 독립운동가에 대해 더욱 세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reality and nature of the execution of
Seodaemun Prison from 1908 to 1945**

Lee, Seungyu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ath penalty executed in Seodaemun Prison from 1908 to 1945. Seodaemun Prison is the only place where the execution site and prison remai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lthough it is recognized as a symbol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 on execution has not been conducted ye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are first dealt with, and the establishment, change, and current state of the death penalty are summarized. Furthermor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executioner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death penal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describ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ntire process from the death penalty to execution and follow-up was legislated and thoroughly managed and controlled. Through this, the legitimacy of the law that can permanently eliminate the anti-Japanese forces was secured, and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the anti-Japanese forces were more strongly applied by using the coloni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by stipulating the retrieval and funeral of the body after execution by law,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was thoroughly prevented from being linked to another anti-Japanese

atmosphere.

The execution center of Seodaemun Prison was originally located on the northeast side of the site – between the present 10 and 11 prisons – at the time of its opening, but it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process of prison expansion around 1922. Currently, there is only one gallows in the execution ground, but in the beginning there were two gallow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when there were many death row prisoners due to the activities of voluntary soldiers, it seems that two were installed for quick and efficient execution.

From 1908 to 1945, the number of executions confirmed by surveying the 'Gazette' was 493, confirming the highest number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Among them, there are many independence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voluntary service, volunteer work, and armed struggle. 92 people, or about 19%, have bee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for the fac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is number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ata supplementation and research.

The Japanese imperialism made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prisoners appear as a just punishment for those who “endangered public security” with acts such as murder or robbery. However, in real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erased and only superficial acts such as ‘murder’ or ‘robbery’ were presented.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rouse interest in independence activists who lost their lives at the gallows of Seodaemun Prison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 : The death penalty, death penalty system, Seodaemun Prison, prison, political prisoner, Thought offenders, Public Peace Maintenance Law, independence activist